

서울특별시종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2006.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8조).
- 라.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또한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사항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참고하도록 함 (안 제9조).
- 마.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는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함 (안 제11조).
- 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와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1. 조례 제정 의의 및 배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법률 제7672호)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영 제109조 및 제59조 등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제4조의 기능을 포함한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안 제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대상을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사람, 계약·기술 등 해당분야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32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데, 적정 위원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4조의 규정에서 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시·군·구위원회는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법 제31조의

무정당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 다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167억 1천만원으로서 공사계약은 2건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92억 3천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34억 9천만원이고, 용역계약은 5건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8억 8천만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1억 5천만원 등이며, 물품계약은 한건도 없는 바,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을 비추어 볼 때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년에 2~3건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아 심의대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이가집니다.

3.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1조의 규정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를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자체 설정에 맞게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공사는 동조제2항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규칙에 그 상한금액과 실비지급기준을 자체 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I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8. 4 법률 제7672호]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9호]

제5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지급기준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①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2.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주민참여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 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정리관 또는 분임정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 당해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표 1>

30억 이상 공사, 5억 이상 용역 및 물품 계약 현황

(건/천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계	7 / 16,715,533	2	12,729,313	5	3,986,220		
2003년	2 / 1,171,085	-	-	2	1,171,085		
2004년	3 / 11,159,603	1	9,232,093	2	1,927,510		
2005년	2 / 4,384,845	1	3,497,220	1	887,625		

☐ 세부내역

○ 2003년

- 2003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609,865,300-
- 정운시민아파트 10개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61,220,000-

○ 2004년

-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9,232,093,000-
- 2004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1,152,510,000-
- 종로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775,000,000-

○ 2005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연간단가) ₩887,625,000-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3,497,220,000-